##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신장식·조 국·황운하

정춘생 · 서왕진 · 김준형

김선민 · 강경숙 · 차규근

박은정 • 이해민 • 김재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제7조 및 제13조).

#### 법률 제 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	②		
는 결원된 날부터 <u>지체 없이</u>	<u>30일 이내에</u>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②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다만,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		
	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 &lt;신 설&gt;</u>	③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		
	의 • 의결에서 제척 • 기피되거		
	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		
	<u>다.</u>		
③ ~ ⑦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8}$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